

거창군청소년문화의집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03~20
----------	---------

제출년월일	2003. 5.
제 출 자	거창군수

제정이유

- 거창군청소년문화의집 시설사용료를 면제 또는 인하함으로써 청소년들의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주요골자

- 청소년문화의집 시설사용에 대한 사용료 징수 기준을 개정함
(안제10조제2항별표1)
 - 당초 : 인터넷부스, 공연연습실, 다목적홀에 대한 사용료 징수
 - 변경 : 다목적홀에 대한 사용료만 징수
 - 일반인이 사용할 경우 1회 4시간 기준 10,000원 징수

개정근거

- 청소년문화의집 시설이용료 무료화 계획(2003. 1. 군수방침)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청소년문화의집조례중개정조례안

거창군청소년문화의집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중 【별표1】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1】 시설사용료(제10조관련)

시설명	기준	사용료	비고
다목적홀	1회 2시간	10,000원	일반인이 사용할 경우를 말하며, 2시간을 초과할 경우 1시간당 5,000원 가산 (단, 냉·난방비 별도)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